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6개 기금 20,7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	2017년 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 성 액 [㉡] ([㉢] = [㉠] + [㉣] - [㉤])	증 감 [㉥] ([㉥] = [㉡] - [㉠])
		수입 [㉢]	지출 [㉣]		
합 계(6건)	19,718,407	2,083,606	1,071,189	20,730,824	1,012,417
통합관리기금	8,149,432	112,700	114,009	8,148,123	△1,309
사회복지기금	6,426,767	832,731	84,900	7,174,598	747,831
체육진흥기금	3,821,257	654,515	30,000	4,445,772	624,515
식품진흥기금	112,281	40,773	42,280	110,774	△1,507
재난관리기금	1,208,670	416,487	800,000	825,157	△383,513
옥외광고정비기금	0	26,400	0	26,400	26,400

Ⅲ. 기금개요

□ 기금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73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인 1,012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총괄

- 2017년도 수입계획은 총 5,88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 1,700백만원, 보조금 34백만원, 용자금회수 37백만원
예치금회수 3,802백만원, 이자수입 275백만원, 기타수입 38백만원이며,
- 2017년도 지출계획은 총 5,88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비용자성사업비 937백만원, 용자성사업비 20백만원
예치금 4,815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4백만원 임.

□ 기금별 운용계획

가. 평창군통합관리기금(기획감사실)

- 설치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 용자
-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362,132	249,432	112,700

▶ 지출계획

(단위:천원)

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362,132	248,123	114,009

-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49백만원, 이자수입 113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예치금 248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에 114백만원 임.

나. 평창군사회복지기금(주민생활지원과)

- 설치목적 :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2,569,404	700,000	36,436	1,736,673	89,295	7,000

▶ 지출계획

(단위:천원)

계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569,404	64,900	20,000	2,484,504

-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700백만원, 융자금회수 36백만원, 예치금회수 1,737백만원, 이자수입 89백만원, 기타수입 7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백만원,
 장애인복지 6개사업 19백만원, 여성복지 6개사업 20백만원,
 노인복지사업 제9회 평창실버가요제 22백만원
 융자성사업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백만원
 예치금 2,484백만원 임.

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경제체육과)

- 설치목적 : 평창군 체육진흥
-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1,254,612	600,000	600,097	54,515

▶ 지출계획

(단위:천원)

계	비용자성사업비	예치금
1,254,612	30,000	1,224,612

○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600백만원, 예치금회수 600백만원, 이자수입 55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사업에 30백만원, 예치금 1,225백만원 임.

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환경위생과)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계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48,054	34,000	7,281	1,773	5,000

▶ 지출계획

(단위:천원)

계	비용자성사업비	예치금
48,054	42,280	5,774

○ 기금의 수입계획은

보조금 34백만원, 예치금회수 7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

기타수입 5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지역대표음식 홍보 15백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등 5개사업 27백만원, 예치금 6백만원 임.

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 설치목적 :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

○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1,625,157	400,000	1,208,670	16,487

▶ 지출계획

(단위:천원)

계	비용자성사업비	예치금
1,625,157	800,000	825,157

○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400백만원, 예치금회수 1,209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응급복구장비 임차 200백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200백만원
재난, 재해예방사업 400백만원, 예치금 825백만원 임.

바. 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도시주택과)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원

○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단위:천원)

계	기타수입
26,400	26,400

▶ 지출계획

(단위:천원)

계	예치금
26,400	26,400

- 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26백만원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 26백만원임

IV. 검토의견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총 6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5.1%가 증액된 20,731백만원임
- 각 기금별 규모를 보면
 - 평창군통합관리기금 8,148백만원
 - 평창군사회복지기금 7,175백만원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446백만원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11백만원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825백만원
 - 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 26백만원임.
- 수입은 전입금 및 예치금회수수입이 전체의 9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출은 응급복구 장비임차·자재구입, 재난·재해 예방사업 장애인·여성·노인복지사업 등 비융자성사업 15.92%,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예치한 예치금이 81.80%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현재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 일몰제도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계획 연도별 이자수입》

(단위 : 천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자수입	442,256	424,905	317,692	274,770

《기금별 존속기한》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	2009년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2018.12.31
사회복지기금	2005년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2020.12.31 (조례개정중)
체육진흥기금	2008년	평창군체육진흥조례	2018.12.31
식품진흥기금	2004년	식품위생법 제89조	-
재난관리기금	200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옥외광고정비기금	2016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